

3.1.11 입학서류심사위원회규정

제정 2000. 04. 21.

개정 2020. 02. 05.

개정 2022. 10. 0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입학 서류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10.04.>

제2조(구성)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 1인
2. 위원 15인 이내
3. 간사 1인

제3조(위원회 위촉) ①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.

1. 입학 서류심사 및 판정 <개정 2022.10.04.>
2. 항공신체검사 서류심사 및 판정 <신설 2020.02.05.>
3. 기타 특별전형 서류심사 및 판정 <신설 2022.10.04.>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.